예결산심의위원회운영규정

제정 2019. 9. 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예결산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 ① 위원회는 예결산 심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총장으로 하며 관련 보직자를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시 전문위원 등을 임명할 수 있다.

제3조(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과 같고,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한다.

1. 재정 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
2. 신규 및 주요 사업시행에 대한 사전 심의 및 승인에 관한 사항
3. 주요 사업 집행 후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학교회계에 속하는 각 부서 예산요구서의 심사 및 조정에 관한 사항
5.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에 부수되는 사항

제6조(소집과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예산편성 및 결산 시기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한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7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모든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간사) 위원회 간사는 기획조정처 예산팀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위원회의 회의자료 수집과 관리, 회의록 작성 등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